

## 건설위원회규정

(폐지: 2019.09.06.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건설계획 및 추진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건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-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교직원과 당연직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)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(삭제 2003.9.1)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본 대학교 장·단기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본 대학교 각종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③ (삭제 2003.9.1)
- ④ 본 대학교 조경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본 대학교 주요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본 대학교 건설담당 주무자가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무를 기록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날인을 받아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경비)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폐지한다.